

다문화가족학생 지원 규정

문서번호	BSKS-2-1-35
제정일자	2012.08.29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2

2012.08.29.제정 2014.02.01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 : 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학생이 대학생활을 함에 있어 어떠한 차별이나 불편함이 없이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및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- 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다문화가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(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)
 - ① 결혼이민자(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)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 - ②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
- 제3조(학생지원) 다문화가족학생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 - ① 다문화가족학생 정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
 - ② 다문화가족학생 학과활동 등 대학생활에 관한 사항
 - ③ 다문화가족학생 상담 · 복지에 관한 사항
 - ④ 다문화가족학생 시설·설비에 관한 사항
 - ⑤ 다문화가족학생 정보제공 ·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
- **제4조(장학금 지급)** 다문화가족학생에게는 장학사정관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(국가)장학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제5조(위원회) 다문화가족학생지원에 관한 운영과 주요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한다.
 - ① 다문화가족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을 위한 각종 편의제공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
 - ② 다문화가족학생 교육관련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③ 다문화가족학생지원관련 규정의 제 · 개정에 관한 사항
 - ④ 기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**제6조(운영지침)** 이 규정에 명시된 것 외에 다문화가족학생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- 제7조(지원 및 협조) 대학 및 다문화가족학생 지원 관련 해당부서에서는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.



다문화가족학생 지원 규정

문서번호	BSKS-2-1-35
제정일자	2012.08.29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2

제8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본 대학의 학칙과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본 규정 관련 업무를 『산학처』에서 『교학처』로 이관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